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18일,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운하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침해사고 등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이용자 보호 조치 가능

- 중대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 신규 모집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는 사업자 변경이 쉬워지고, 사업자는 이탈 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려는 유인이 생겨 효과적인 권익 구제가 가능하여 입법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침해사고 위반 사항 발생 행태를 감안한 금지행위 규정 내용의 수정, 이용자의 신청·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호조치가 금지행위와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2)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의 전기통신사업자 손해배상 의무 규정 등

- 정보통신망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 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해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있으나, ①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등 손해배상 책임과의 중복 가능성, ②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태양¹⁾을 고려한 내용 수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견: 손해배상은 현행 타 법으로도 가능하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관련 입증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보험·공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 가입 비용이 소비자 전가 가능성이 있어 신중 검토 필요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주로 해커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히기는 어렵다는 점 감안할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